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2025.12.11 조례 제2568호

관리책임부서명 : 대중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교통비 지급을 통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4.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개정 2025. 12. 11>

나. 삭제 <2025. 12. 11>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개정 2025. 12. 11>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개정 2025. 12. 11>

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신설 2023. 12. 15.>

2.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통비 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본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11>

③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48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 3. 12.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 12. 11.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